

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2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김진수, 김제리, 고병국,
김용연, 홍성룡, 송아량,
권영희, 김경우, 김소양,
성중기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·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‘손상’을 ‘오염·훼손’으로 변경함. (안 제7조제1항)
- 나. 시민들이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다.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함. 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라.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함. (안 제7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10조

「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‘손상’을 ‘오염·훼손’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.
-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</p> <p>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오염·훼손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.</u></p> <p>③ <u>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제2항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5,000천원

- 5년간 1회 5,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
- 추계의 전제
 - 국기수거함은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비용(200천원) 외에 운영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
 -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4개 기관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5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국기수거함 설치비용	5,000	-	-	-	-	5,000
	소계(b)	5,000	-	-	-	-	5,000
□ 총 비용(b-a)		5,000	-	-	-	-	5,000

○ 국기수거함 설치 비용

- 5년간 1회 발생 비용 ≙ 5,000천원

- 5,000천원 ≙ 200천원 × 25개소(본청 민원실 포함)

※ 자료 : 국기수거함 단가는 인터넷 시중가를 조사하여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